

## 논문집 편집 및 심사에 관한 규정

### 1. 편집위원회 구성 및 편집 방향

#### 가.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

- 1) 편집위원회는 논문집의 편집, 심사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.
- 2) 편집위원회는 연구소 규정에 의거,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연구소장이 위촉한 편집위원들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임한다.
- 3)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4) 편집위원은 연구소의 이념과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고 현재 관련 학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전문 학자 가운데서 인선하되, 학술연구 업적과 연구소 활동 참여도, 전공 등을 고려한다.
- 5)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참여로 개최한다.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되, 의견이 엇갈릴 경우 다수결 원칙을 따르며 가부동수일 경우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.
- 6) 편집자문위원은 본 연구소의 연구활동을 학계간으로 활성화시키고, 일본학연구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한편,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들에 대해 자문한다.
- 7) 편집자문위원은 연구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촉한다.
- 8) 국내외 편집자문위원은 연구소의 이념과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고 학술연구 업적과 연구소 활동 참여도, 전공 등을 고려하되, 특히 학술연구의 국제화를 견인할 수 있는 학자 가운데서 인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#### 나. 논문집 명칭, 발간시기 및 원고 마감

- 1) 논문집의 명칭은 『일본학』(영문:THE ILBON-HAK Journal of Japanology)로 한다.
- 2) 연간 3회, 매년 4월 30일, 8월 31일, 12월 31일에 논문집을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(2020년 5월까지의 연간 2회, 매년 5월 31일과 11월 30일)
- 3) 원고 마감은 매년 3월 31일, 7월 30일, 11월 30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(2020년 5월까지의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)

#### 다. 편집의 방침

- 1) 본 논문집은 일본학 분야의 전문 학술지로서, 학술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원고를 선별하여 실는다.
- 2) 본 논문집은 학술 연구논문을 주축으로 삼는다.
- 3) 연구논문의 편집과 관련하여 학계의 연구를 효율적으로 선도할 만한 기획 특집을 연구소 학술회의와 연관하여 적극 추진한다.
- 4) 연구논문 외에 학계의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올바른 연구방향을 모색하는 뜻에서 연구서에 대한 서평 등을 수록할 수 있다.
- 5) 전문적인 학술 연구 작업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들을 발굴하여 해설과 함께 수록할 수 있다.

- 6) 이 외에 학계의 연구 작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물(학술기행, 강연록 등)을 수록할 수 있다.
- 7) 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논문 필자의 소속과 직위(저자 정보)가 정확하진 반드시 검토한다.
- 8) 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저자 정보를 상시 확인 및 관리하고,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.

라. 논문집의 배부 및 원고료

- 1) 발행 부수는 당해연도 연구소 예산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.
- 2) 무가지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3) 국내 대학의 도서관, 국내외 관련 연구소와 학회 및 국내 전공교수에게 배부한다.
- 4) 논문집 게재 논문의 원고료는 해당 논문집 2권과 별쇄본 20부로 한다.
- 5) 원고를 투고할 때에는 심사료 6만원을 납부해야 한다.
- 6) 심사 완료 후 게재로 판정된 일반논문은 10만원, 연구비 지원 논문은 2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한다.

2. 논문집 심사 규정

가. 심사의 주관

- 1) 논문집의 심사 작업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.
- 2)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 마감 후 즉시 회의를 개최하여 투고된 논문이 학술지 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하고, 3인의 해당분야 전문학자를 심사위원으로 배정하여 10일 이내에 심사를 의뢰한다.
- 3) 심사위원 위촉 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을 원칙적으로 심사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4) 편집위원이 투고하게 되면, 해당 호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편집위원을 일시 배제하고,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연구소 임원을 위촉하지 않는다.
- 5) 심사를 수락한 심사위원은 초심인 경우 10일 이내, 재심인 경우 7일 이내에 논문 심사를 마치고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에 그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.
- 6) 연구논문(특집 논문 및 일반 논문)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전공 심사위원 3인이 게재 및 수정 여부를 결정한다.
- 7) 연구논문 이외의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
나. 심사의 기준

- 1) 연구논문
  - (1) 모든 투고는 한국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.
  - (2) 투고된 모든 논문은 반드시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
  - (3) 본 논문집 게재 논문은 다른 지면을 통해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원고여야 한다.
  - (4) 본 논문집 심사에서 '반려'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없이 재투고할 수 없다.

- (5) 본 논문집 게재 논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  - 주제나 방법, 결과에 있어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인식을 담고 있어야 한다.
  - 문제에 대한 논증을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개한 것이라야 한다.
  - 본격 학술논문으로서의 형식과 체재를 온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.
- (6) 본 논문집 투고 논문은 연구소의 원고 투고규정을 지켜야 한다. 투고규정에 어긋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.

2) 서평 및 기타 원고

- (1) 투고된 모든 원고는 반드시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
- (2) 서평의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거하여 학계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.
- (3) 여타 기획물의 경우 학술적 깊이와 함께 학계의 연구 활동에 기여할 만한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.
- (4) 모든 원고는 본 연구소의 투고규정을 지켜야 한다. 투고규정에 어긋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.

다. 심사의 절차

1) 연구논문

- (1) 편집위원회는 각 원고에 대하여 전공 학자 가운데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. 이때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신원을 비밀로 하여 심사에 공정성을 기한다.
- (2)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을 검토하여 심사 결과를 '게재'(A), '부분수정 후 게재'(B), '수정 후 재심사'(C), '반려'(D) 가운데 하나로 판정하여 심사소견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.
- (3) 3인의 심사 의견 중에서 2인 이상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 판정에 따른다.
- (4) 단, 심사위원 1인이더라도 반려판정을 한 경우에는 위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종합 판정한다.
  - 수정 후 재심사: AAD, BBD
  - 반려: CCD
- (5) 심사위원의 견해가 엇갈려 위 3, 4항의 규정에 의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래 기준에 따라 종합 판정한다.
  - 부분 수정 후 게재: ABC
  - 수정 후 재심사: ABD, ACD
  - 반려: BCD
- (6) 종합판정에서 '부분수정 후 게재'와 '수정 후 재심사'에 해당하는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수정본과 심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.
- (7) 위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의 보편타당한 정신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한다.
- (8) 모든 논문의 심사결과는 투고자에게 통보한다. 단, 심사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

는다.

2) 서평 및 기타 원고

- (1) 편집위원회에서는 각 원고에 대하여 유관 분야의 편집위원 2인에게 심사를 위촉한다.
- (2) 심사를 맡은 편집위원은 원고를 검토하여 ‘계재’, ‘부분수정 후 계재’, ‘수정 후 재심사’, ‘반려’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여 심사소견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.
- (3) 심사위원 2인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 의견에 따르며, 의견이 엇갈릴 경우 편집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원고의 계재와 수정 여부를 결정 집행한다.
- (4) 모든 원고의 심사결과는 투고자에게 통보한다.

라.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

논문투고자는 심사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논문심사 및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제기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한다.

마. 이의제기에 대한 대응

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 및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접수하는 즉시 편집위원회 또는 분야별 위원회를 소집하여 제기된 이의를 심의해야 하며, 그 결과를 이의제기자에게 통보하고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한다.

바. 계재 논문의 사후 심사 및 조치

1) 계재 논문의 사후 심사

- (1) 논문집에 계재된 논문에 대하여는 사후 심사를 할 수 있다.
- (2) 사후 심사는 편집위원회의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사후심사요청서의 검토 결과, 대상 논문이 그 논문이 수록된 본 논문집 발행일자 이전의 간행물 또는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시킬 만한 연구 내용을 현저한 정도로 표절 또는 중복 계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限한다.
- (3) 계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 계재와 관련하여 사후 심사를 요청하는 사후심사요청서를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후심사요청서는 밀봉하고 겹봉에 ‘사후 심사요청’임을 명기하되, 발신자의 신원을 겹봉에 노출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
- (4) 사후심사요청서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이 개봉한다.
- (5) 사후심사요청서는 표절 또는 중복 계재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
2) 사후 심사의 절차와 방법

- (1) 계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 계재에 관한 사실 여부를 심의하고 사후 심사자의 선정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- (2)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 표절이나 중복 게재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 편집위원장 명의로 해당 논문의 필자에게 질의서를 우송한다.
- (3) 질의서를 받은 논문 필자는 질의서 수령 후 20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.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없을 경우에는 논문 필자가 질의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.

3) 사후 심사 결과의 조치

- (1) 편집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 또는 마감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후 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.
- (2)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후 심사 결과를 7일 이내에 사후 심사를 요청한 이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(3) 편집위원회에서 표절 또는 중복 게재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, 소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.
  - ① 연구소 홈페이지 및 다음 호 논문집에 그 사실 관계 및 조치 사항들을 기록한다.
  - ② 논문집 전자판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.
  - ③ 해당 논문 필자의 논문 투고는 향후 최소 5년간 접수하지 아니한다.
- (4) 표절 및 중복 게재에 관한 이의 및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 심사를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을 절대적으로 밝히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.

사. 부칙

- 1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내규에 따른다.

2008년 9월 1일 제정  
2016년 3월 1일 개정  
2020년 3월 1일 개정

## 투고 규정

### 1. 투고 범위와 자격

- 가. 본 논문집에는 일본학 및 유관 분야에 관한 논문과 서평, 학술 기획물을 실는다.
- 나. 투고자는 일본학연구소 연구원 및 일본학 관련 연구자에 한정한다. 단,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본학 연구를 고양할 수 있는 비전공자의 원고를 투고 받아 게재할 수 있다.

### 2. 원고 작성의 원칙

- 가. 원고는 한국어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.
- 나. 원고는 한글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한다.
- 다. 사진이나 그림, 도표 등은 스캔하여 그림파일로 첨부하거나 완전한 형태의 원판을 첨부한다. 각각 게재 순으로 <사진1>, <그림1>, <표1>과 같이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본문(그림1을 삽입)에 넣을 곳을 표시한다.
- 라. 원고 분량은 아래에 별첨한 ‘원고 작성 요령’에 따라 20매로 한다. 서평 및 기타 원고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한다. 부득이 추가되는 원고에 따르는 경비는 투고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마. 원고의 별지에 영문 제목과 영문 필자명, 소속, 전화번호, 주소, 메일주소 등을 명기한다.
- 바. 외래어 표기는 문화체육부 고시 제1995-6호(1995.3.16.)의 표기법에 따른다.
- 사.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.

### 3. 투고 논문 접수 및 제출처

- 가. 한글 소프트웨어로 작성된 논문을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나. 원고의 제출은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온라인투고시스템을 원칙으로 한다.  
<https://submission.dongguk.edu/>

### 4. 학술지 발간

- 연간 3회, 매년 4월 30일, 8월 31일, 12월 31일에 논문집을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(2020년 5월까지의 연간 2회, 매년 5월 31일과 11월 30일)

### 5. 저작권

- 투고한 논문은 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게재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본 연구소에 귀속한다. 따라서 투고자는 게재 논문이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.

## 6. 게재

제출된 논문은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
## 7. 교정

게재될 원고의 교정은 투고자의 책임 하에 행한다.

## 8. 심사료 및 게재료

가. 심사비 : 60,000원(투고시 입금)

나. 게재료 : 심사 완료 후,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한 함.  
일반논문 (10만원) / 연구비 지원 논문(20만원)

다. 납부처 : 신한은행 110-357-278675 / 김환기(일본학연구소장)

## 9. 원고 작성 요령

### 가. 일반사항

#### 1) 원고 제출

원고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하여, 한글(hwp) 파일과 함께 제출한다.

#### 2) 편집 용지

한글의 메뉴 ‘모양’의 ‘편집용지(F7)’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설정한다.

·용지 : A4, 용지 방향 : 세로

·여백 : 위쪽57, 아래쪽57, 왼쪽52, 오른쪽52, 머리말13, 꼬리말0, 제본0.

#### 3) 원고 분량

위의 편집용지 기준에 따라 요지, 본문,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20매까지 허용한다(※요지 포함). 초과분에 대해서는 투고자 1매당 5,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담한다.

### 나. 상세사항

#### 1) 논문 제목 및 저자명

##### (1) 국문 및 영문

글꼴: 신명조, 크기: 15, 글자속성: 진하게, 장평: 100, 자간: -10, 줄 간격: 155, 정렬방식: 가운데

##### (2) 일문

글꼴: 신명조약자, 기타 국문과 같음

##### (3) 부제의 경우

글꼴: 11, 글자속성: 보통, 장평: 100, 자간: -10, 줄 간격: 430, 정렬방식: 가운데

##### (4) 저자명

글꼴: 크기: 11, 글자속성: 보통, 장평: 100, 자간: 15, 줄 간격: 300, 정렬방

식: 오른쪽

- (5) 투고자명 끝에 \*표를 위첨자한 후 소속, 직위, 전공분야, 전자우편주소를 각주로 기입한다. 각주번호 '1'은 블록을 씌워 '글자모양'에서 글자색을 흰색으로 지정하여 감추고, 본문에서 각주가 시작될 때는 '모양'의 '새 번호로 시작'에서 각주번호를 '1'로 한다.

- ※ 투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필자를 앞에 공동필자를 뒤에 기재한다.
- ※ 연구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제목에 주를 달고 하단 주석란에 표기한다.
- ※ 일문의 경우 글꼴을 신명조약자로 바꾸고 나머지는 국문과 동일함.

2) 목차

- (1) <目次> 또는 <목차> -첫째 줄에 입력  
국문-글꼴: 신명조, 크기: 10, 글자속성: 보통, 장평: 100, 자간: 0, 줄간격: 155, 정렬방식: 가운데.  
※ 일문-글꼴: 신명조약자, 기타 국문과 동일
- (2) 목차내용  
국문-글꼴: 신명조, 크기: 9, 글자속성: 보통, 장평: 95, 자간: -5, 줄간격: 155, 정렬방식: 양쪽  
※ 일문-글꼴: 신명조약자, 기타 국문과 동일

3) 본문

- (1) 국문-글꼴: 신명조, 크기: 10, 글자속성: 보통, 장평: 100, 자간: -10, 줄간격: 155, 정렬방식: 양쪽  
일문-글꼴: 신명조약자, 이 외 국문과 같음
- (2) 큰 제목-글꼴: 신명조, 크기: 12.5, 글자속성: 진하게, 장평: 100, 자간: -10, 줄간격: 155, 정렬방식: 양쪽
- (3) 작은 제목-글꼴: 신명조, 크기: 11.5, 글자속성: 진하게, 장평: 100, 자간: -10, 줄간격: 155, 정렬방식: 왼쪽
- (4) 인용-상하를 한 칸 띄운 후, 들여쓰기: 20p, 크기: 9, 이외 본문과 동일함.  
※ 일문-글꼴: 신명조약자, 기타 국문과 동일

4) 약호(기호)

- (1) 각종 단행본, 신문 잡지, 장편소설, 전집 등 → 『 』
- (2) 논문(학위 논문 포함), 시, 중·단편 소설, 희곡작품, 단행본 속의 소제목, 기타 독립된 짧은 글 제목 → 「 」
- (3) 강조, 요약 또는 발췌 인용 → ‘ ’
- (4) 원문 인용 → “ ”
- (5) 원저자 및 원서명 표기 → 예) 아사카와 다쿠미(浅川巧)
- (6) 한글표기와 한자표기의 음가가 같은 경우 → 예) 사료(史料)



## 5) 각주

국문-글꼴: 신명조, 크기: 8, 왼쪽: 10, 내어쓰기: 10.5, 글자속성: 보통, 장평: 100, 자간: -6, 줄간격: 130, 정렬방식: 양쪽혼합

※ 일문-글꼴: 신명조약자, 기타 국문과 동일

## A. 한국어 문헌

## (a) 논문

고영섭, 「한·일 불교연구에서 상호 인식의 문제」, 『일본학』 제23집,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, 2004, pp.122~123.

## (b) 저서 및 편저서

林基中 편, 『한국과 일본의 상생문화』(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일본학총서 5), 동국대학교출판부, 2005, pp.156~158.

## (c) 번역서

테사 모리스 스키, 박광현 옮김, 『일본의 아이덴티티를 묻는다』, 산처림, 2005, pp.35~43.

## (d)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을 두 번 이상 인용할 때에는 바로 앞에서 인용한 것은 ‘위의 책’ 또는 ‘위의 논문’으로 표기한다.

<예>

林基中 편, 『한국과 일본의 상생문화』(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일본학총서 5) 동국대학교출판부, 2005, pp.156~158.

林基中 편, 위의 책, p.169.

## (e) 바로 앞에 인용되지 아니 한 저서나 논문을 다시 인용하는 경우 책명 (또는 논문명)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줄여서 표기한다.

<예>

고영섭, 「한·일 불교연구에서 상호 인식의 문제」, 『일본학』 제23집,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, 2004, pp.122~123.

고영섭, 「한·일 불교연구에서 상호 인식의 문제」, p.128.

## B. 일본어 및 중국어 문헌

## (a) 논문

坪井秀人, 「近代詩における<言と文>」, 『文学』 第8巻・第6号, 岩波書店, 2007, 11~12, pp.79~80.

## (b) 저서 및 편저

齋藤希史, 『漢文脈の近代』, 名古屋大学出版会, 2005, pp.210~213.

## (c) 번역서

Michel Foucault, 中村雄二郎訳, 『知の考古学』, 河出書房新社, 1970, p.125.

## C. 영어 등 로마자로 표기되는 문헌

## (a) 논문

Lee, Helen, J.S., “Voices of the ‘Colonists’, Voices of the ‘Immigrants’ :

‘Korea’ in Japan’s Early Colonial Travel Narratives and Guides, 1894–1914,” *Journal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*, Vol. 41, April 2007, University of Colorado (Association of Teachers of Japanese), pp.1~36.

- (b) 저서 및 편저  
Masao Miyoshi, *As We Saw Them : the first Japanese Embassy to the United states(1860)*, Berkeley :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, 1979, pp.172~180.
- (c) 번역서  
Michel Foucault, *The Archaeology of knowledge*, trans. A. M. Sheridan Smith, London : Tavistock, 1972, pp.53~60.
- (d)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을 두 번 이상 인용할 때에는 바로 앞에서 인용한 것은 ‘ibid. p.34.’로 표기한다.
- (e) 바로 앞에 인용되지 아니 한 저서나 논문을 다시 인용할 때에는 ‘op. cit. pp.210~215.’로 표기한다.

D. 인터넷 자료의 인용은 필자명, 글 제목, 인터넷 주소, 검색 일자 순으로 표기한다.

6) 참고문헌

- (1) 국문-글꼴: 신명조, 크기: 8, 글자속성: 보통, 장평: 100, 자간: 0, 줄간격: 150, 내어쓰기: 30

※일문-글꼴: 신명조약자, 기타 국문과 동일

- (2) 한국어, 일본어 및 중국어, 영어 등 로마자로 표기되는 문헌, 인터넷 자료 순으로 하고, 필자명을 기준으로 각 언어의 자모순으로 배열한다.

<예>

한철호, 「일본 근현대사에 관한 한국인의 역사인식」, 『일본학』 제24집,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, 2004.

홍기삼 편, 『재일 한국인문학』(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일본학총서 2), 솔, 2001.

- (3) 동일 저자의 문헌이 2개 이상일 때는 연도별로 선을 그어 표기한다.
- (4) 논문-필자명, 「논문명」, 게재지명, 권호수, 출판년도.
- (5) 저서-저자(편), 『도서명』, 출판사, 출판년도.
- (6) UCI, DOI가 있는 문헌의 경우 UCI, DOI를 기재한다.

<예>

김경수, 「「~にくい」와 「~づらい」의 의미용법에 대하여」, 『일본학』 제45집,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, 2017, pp125~142. <http://dx.doi.org/10.21442/djs.2017.45.05>

- (7)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을 명시한다.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참고문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.
- (8)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학술 논문의 관행을 따른다.

## 7) 요지

- (1) 시작하는 줄 왼쪽 끝에 가로 글상자를 삽입하고 ‘요지’ 또는 ‘要旨’, 영문 요지에는 ‘ABSTRACT’라고 기입한다.
- (2) 요지는 원문과 같은 언어로 작성하고 반드시 영문 요지를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(3) 요지 서식: 신명조(한글, 영문), 신명조약자(일문), 크기: 9(제목: 12, 부제: 10), 글자속성: 보통모양, 장평: 95, 자간: -5, 줄간격: 160, 정렬방식: 양쪽혼합
- (4) 요지내용은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.
- (5) 주제어(Keyword)  
요지문의 말미에는 논문의 내용을 함축할 수 있는 5개 이내의 주제어를 요지문과 동일한 언어로 작성한다.

8)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학술 논문의 관행을 따른다.

## 9) 인적사항

논문제목: (1)국문 (2)영문  
 성명: (1)국문 (2)영문  
 소속 및 직위:  
 주소: (논문이나 긴급연락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는 주소)  
 전화: (긴급연락처)  
 E-mail주소:

2008년 9월 1일 제정

2014년 6월 1일 개정

2017년 12월 1일 개정

2020년 3월 1일 개정

# 연구윤리 규정

## 제1장 총칙

- 제1조(규정) 본 규정은 일본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, 학술대회발표문, 그리고 기타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저의 연구 윤리 준수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.
- 제2조(목적) 본 규정은 일본의 역사, 문화, 사회를 연구하여 상호이해와 문화교류에 공헌한다는 연구소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연구자들의 학술활동 중 준수해야 할 윤리적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윤리적인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- 제3조(기능) 학술지 『일본학』과 연구소 발간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문, 학술대회 발표문의 연구 윤리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제기와 판단, 그리고 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## 제2장 조직

### 제4조(구성)

- 1) 윤리위원회(이하 위원회)는 학술지, 학술대회발표문, 그리고 기타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저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설치한다.
- 2) 윤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.
- 3) 연구소장 및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윤리위원이 되며, 나머지 5인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임한다.
- 4) 위원장은 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.

### 제5조(임기)

- 1) 당연직 구성인원의 임기는 각 직책의 임기를 따른다.
- 2) 선임 위원 임기는 해당 사안의 종료 때까지로 한다.

## 제3장 운영

제6조(대상) 본 위원회가 문제 삼는 연구 윤리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은 위.변조와 표절, 중복 게재 등의 행위이다.

제7조(범위) 문제가 되는 행위는 다음 조항에 나열된 것으로 한정한다.

- 1) 출처를 밝히지 않고 원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, 용어, 분석 체계를 임의로 쓴 경우.
- 2) 원저자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공개 또는 출판되지 아니한 원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, 용어, 분석 체계를 임의로 쓴 경우.
- 3)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, 새로운 의견 없이 여러 편의 글을 합편한 경우.

- 4) 타인의 공적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거나 연구에 실질적인 기여가 없는 사람을 공동 저자로 하는 경우.
- 5) 기타 관련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.

제8조(회의)

- 1)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소장이 소집하며, 회의를 통해 해당 논문의 연구 윤리 위반 심사 및 규제 정도를 결정한다.
- 2) 필요에 따라 제보자 및 피제보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. 단, 본인이 원할 경우 위원장의 판단으로 서면 및 기타의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.
- 3) 피제보자와 동일 기고나 소속의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심사에서 배제된다.

제9조(보호) 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제보자 및 피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다음의 조항을 따른다.

- 1) 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제보나 문제제기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고, 허위 사실을 제보한 경우에는 피제보자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간주하여, 향후 본 연구소의 학술 활동에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.
- 2)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- 3) 피제보자에게는 문제가 된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.

## 제4장 심사와 집행

제10조(심사의 절차)

- 1)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해 최초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·의결해야 한다.
- 2) 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보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구체적인 검토를 한다.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.
- 3) 위원회는 판정을 확정짓기 전에 피제보자에게 연구 윤리 위반 혐의를 알리고,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.
- 4)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참여로 개최한다.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되, 의견이 엇갈릴 경우 다수결 원칙을 따르며 가부 동수일 경우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.
- 5) 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보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피제보자의 소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, 피제보자의 혐의 없음을 제보자 및 피제보자에게 즉시 통보한다.
- 6) 위원회는 심의 결과 연구 윤리 규정 위반으로 확정되면, 아래 제 11조의 학술 활동 제한 내용을 최종 결정하여 연구소장에 즉시 통보하며 소장은 즉각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제11조(학술 활동 제한의 종류) 연구 윤리 위반이 확정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소의 학술 활동을 제한한다.

- 1) 해당자의 논문 투고 접수 거부(5년 이상: 기한은 윤리위에서 결정함)
- 2) 해당 논문 취소 및 연구소 홈페이지 원문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.
- 3) 연구소 홈페이지와 『日本學』에 연구윤리 위반사실을 공시.

- 4) 해당자의 소속 기관 및 연구비수혜기관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

### 제5장 기타

제12조(기타) 연구 윤리 위반 행위가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에 사용된 제반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.

### 부 칙

1. 본 연구윤리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2. 본 연구윤리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3.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<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>(교육부훈령 제263호, 2018.7.17.시행)에 따른다.

## 일본학연구소 임원 명단

- 역대 연구소장** 정재각, 김사업, 신근재, 신용태,  
공로명, 홍운식, 남근우
- 소 장** : 김환기(동국대학교)
- 운 영 위 원** : 강석우(가톨릭대학교)  
서인범(동국대학교)  
유임하(한국체육대학교)  
이정철(동국대학교)
- 연 구 위 원** : 김양수(동국대학교)  
박광현(동국대학교)  
이한정(상명대학교)  
정병호(고려대학교)
- 편 집 위 원 장** : 서정원(한림대학교: jsuh@hallym.ac.kr)
- 편 집 위 원** : 고혜정(가톨릭관동대학교: nunbusida@hanmail.net)  
김동윤(제주대학교: kdy64@cheju.ac.kr)  
김웅기(홍익대학교: whkim@hongik.ac.kr)  
방극철(순천대학교: banggc@sunchon.ac.kr)  
방운형(수원대학교: yh-bang@hanmail.net)  
신승모(경성대학교 : isigan@hanmail.net)  
이지형(숙명여자대학교 : leegh87@sm.ac.kr)  
정승운(전남대학교: sujeong@jnu.ac.kr)  
최재목(영남대학교: choijm@ynu.ac.kr)  
추석민(신라대학교: smchoo@silla.ac.kr)  
板倉聖哲(東京大学)  
川村湊(法政大学)  
吉本一(東海大学)
- 전 임 연구 원** : 조수일
- 전 문 연구 원** : 김학동 이지영 이영호 유명민
- 조 교** : 민건기

## 일본학 제50집

---

인쇄일 : 2020년 5월 25일

발행일 : 2020년 5월 31일

발행인 : 김환기

발행처 :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일본학연구소

100-715 서울시 중구 필동로 1길 30

Tel. 02) 2260-3512, Fax. 02) 2272-6613

---

이 책은 王利鎬日本學研究財團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.